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2. 14 선고 2021가단3681 판결 [소멸시효중단을위한
확인(사해행위취소 등)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11. 23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4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. 9. 2. 선고 2010가합287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권성우

청 구 원 인

1.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287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2011. 9.
2. "피고 B,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69,000,000원 및 그 중 469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8. 4. 15.부터, 5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8. 7. 2.부터 각 2011. 9. 2.까지는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2. 민법 제162조에 의한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어 시효의 중단이 필요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